서울특별시 조례 "건설기술용역"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3046 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:박순규 의원(1명) 찬 성 자 :권영희, 김기대, 김정태,
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봉양순, 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신정호, 양민규, 이광호, 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 장상기, 최웅식, 최정순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"용역"이라는 단어가 단순 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지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건설기술이 설계, 감리, 타당성 조사 등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을 개 정하여 2021년 3월 16일 공포함.
-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"건설기술용역"을 "건설엔지 니어링"으로 변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 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"건설기술용역"을 "건설엔지니어링"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"건설기술용역"용어 일괄정비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"건설기술용역"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 중 "건설기술용역"을 "건설엔지니어링"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"건설기술용역"을 각각 "건설엔지니어링"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"건설기술용역업자"를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